|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공 고<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개정 결정>이 2019년 10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7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최고인민법원2019년 12월 25일**최고인민법원의****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법석(2019)19호(2001년 12월 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201차 회의에서 통과; 2019년 10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77차 회의에서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개정 결정>에 의해 개정)인민법원의 정확한 사실인정 및 공정하고 적시적인 사건 심리를 보장하며 당사자의 법에 의거한 소송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그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으로 약칭)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사심판 경험과 실제상황을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I. 당사자의 거증**1.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제기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거증의 요구사항과 법적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극적•전면적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거증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사유로 자신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의 조사•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송 중에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거증할 필요가 없다.

증거의 교환•신문•조사 중에 또는 소장•답변서•소송대리인의견서 등 서류에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심판원의 설명•신문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긍정 또는 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에서 명확히 배제시킨 사항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의 자인(自認)은 당사자의 자인(自認)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소송대리인의 자인(自認)을 명확히 부인하는 경우 자인(自認)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1.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명 또는 여러명이 한 자인(自認)은 자인(自認)을 한 당사자에 한해 효력을 발생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명 또는 여러명이 자인(自認)을 하고 기타 공동소송인이 부인한 경우 자인(自認)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기타 공동소송인이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심판원의 설명•신문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체 공동소송인이 자인(自認)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1.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제한부로 또는 조건부로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결부시켜 자인(自認)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
2.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9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자인(自認)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인(自認)한 사실이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과 다른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사자가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자인(自認)을 취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허용하여야 한다.
2.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
3. 협박 또는 중대한 오해로 인해 자인(自認)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인(自認) 취소를 허용함에 있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1. 다음 각 호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는 거증할 필요가 없다.
2. 자연법칙 및 정리•정률
3. 주지의 사실
4.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추정한 사실
5.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일상생활의 경험•법칙에 근거하여 추정해낸 다른 사실
6. 이미 효력을 발생한 중재기구의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사실
7. 이미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에서 인정한 기본 사실
8. 유효한 공증문서에 의해 증명된 사실

전항 제(2)호 ~ 제(5)호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반박 가능한 반대증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호, 제(7)호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대증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 원본 또는 원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신이 증거의 원본 또는 원물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거나 원본•원물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원본•원물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사본•복제품을 제출할 수 있다.
2. 동산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원물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물이 이동 또는 보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당사자는 복제품•영상자료 또는 기타 대체품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로부터 동산 또는 대체품을 제출받은 후 적시에 양 쪽 당사자에게 인민법원 또는 보관현장에 출두하여 확인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1. 당사자가 부동산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영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쪽 당사자에게 현장에 출두하여 확인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1. 전자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정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웹페이지, 블로그, 미니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 발표된 정보
3.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인스턴트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그룹 등 인터넷 응용 서비스의 통신 정보
4. 이용자등록 정보, 신분인증 정보, 전자거래 기록, 통신 기록, 등록 일지 등 정보
5. 서류, 이미지, 음성파일, 영상파일, 디지털 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문서
6. 디지털 형태로 저장•처리•전송되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정보
7. 당사자가 시청각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청각 자료가 저장된 원시 저장장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전자 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 데이터 작성자가 작성한 원본과 틀림이 없는 부본, 또는 전자 데이터가 그 직접적 출처인 인쇄본 또는 표시•식별이 가능한 기타 출력매체는 전자 데이터의 원본으로 간주한다.1. 당사자가 제출하는 공문서가 중화인공화국 영역 외에서 작성된 것일 경우 해당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치거나 중화인민공화국과 해당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작성된 신분관계와 연관된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 절차와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국가 주재 영사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중화인민공화국과 해당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당사자가 인민법에 제출하는 증거가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에서 작성된 것일 경우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1.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하는 외국어로 작성된 서증 또는 설명자료에는 중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2. 양 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그가 제출하는 증거를 분류하여 번호를 매기고 증거자료의 출처, 증명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고 제출일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증거를 제출 받은 후 접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접수증에는 증거의 명칭• 부수•페이지수 및 접수시간을 기재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II. 증거의 조사•수집 및 보전**1.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증거의 조사•수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거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성명 또는 업체 명칭과 주소지 등 기본 정보, 조사•수집하고자 하는 증거의 명칭 또는 내용, 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수집하여야 하는 원인,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및 명확한 단서를 기재하여야 한다.1. 인민법원이 조사•수집한 서증은 원본이거나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부본 또는 사본일 수도 있다. 부본 또는 사본의 경우 조사기록에 출처와 증거 수집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인민법원이 조사•수집한 물증은 원물이어야 한다. 피조사인이 원물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복제품 또는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복제품 또는 영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기록에 증거 수집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인민법원은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를 조사•수집함에 있어 피조사인에게 원시 저장장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원시 저장장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조사기록에 그 출청와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인민법원이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에 대해 증거보전을 취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 인민법원은 감정이 필요한 증거를 조사•수집함에 있어 관련 기술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증거가 오염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보전이 필요한 증거의 기본상황, 보전 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고자 하는지 등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는 경우 거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률•사법해석에 제소전 증거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봉인(査封)•압류(扣押) 등 보전 목적물의 사용•유통을 제한하는 보전 조치를 신청하거나 보전으로 인해 증거 보유자에게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담보방식 또는 담보액수는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가 증거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보전 목적물의 가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다투는 소송 목적액 등 요인을 종합하여 확정한다.1. 인민법원은 증거보전 진행 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현장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과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봉인(査封)•압류(扣押)•녹음•녹화•복제•감정•검증 등 방법으로 증거보전을 할 수 있으며 기록을 작성한다.증거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전제하에서 인민법원은 증거 보유자의 이익에 최소의 영향을 미치는 보전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1. 증거보전의 신청 착오로 초래된 재산손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청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 인민법원이 제소전 증거보전 조치를 취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기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전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보전한 증거를 적시에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 중에 특정 사실에 대한 감정의견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감정 신청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에 의해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감정 신청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정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료를 선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정이 필요한 특정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료를 선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특정 사실의 판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거증불능의 법적 결과를 부담하여야 한다.1. 인민법원은 감정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양 쪽 당사자가 협상을 거쳐 해당 자격을 구비한 감정인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한 감정인 확정에 실패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인민법원은 직권에 의해 감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자격을 구비한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감정을 시작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의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의뢰서에는 감정사항, 감정범위, 감정목적 및 감정기한이 기재되어야 한다.1. 감정을 시작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감정인에게 승낙서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승낙서에는 감정인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성실한 감정 약속, 법정 출석 및 증언 약속, 거짓 감정 시 부담하는 법률책임 등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적으로 거짓 감정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감정료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경위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1.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감정재료에 대한 증거인부(質證)를 하여야 한다. 증거인부(質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료는 감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감정인은 인민법원의 허락을 받은 후 증거 인출, 물증 및 현장 검증, 당사자 또는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1. 감정인은 인민법원이 확정한 기한 내에 감정을 완료하고 감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감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허가한 경우 기존 감정인이 이미 수취한 감정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 규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1.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발행한 감정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감정을 의뢰한 법원의 명칭
3. 감정 의뢰 내용, 요구사항
4. 감정재료
5. 감정 시 의거한 원리•방법
6. 감정 과정에 대한 설명
7. 감정의견
8. 승낙서

감정서에는 감정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감정인의 해당 자격증명을 붙여야 한다.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서에는 감정기관의 공인을 날인하고 감정 업무 수행자가 서명하여야 한다.1. 인민법원은 감정서를 받은 후 적시에 부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당사자의 이의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감정인에게 해석•설명 또는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해석•설명 또는 보충을 감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1. 당사자가 감정인의 서면답변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감정인법정출석비용을 선납하도록 통지하고 감정인에게 법정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감정인법정출석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 쪽 당사자 모두 감정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인법정출석비용을 분담하여 선납한다.1. 감정인법정출석비용은 증인법정출석비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감정의견이 불명확하거나 감정의견에 하자가 있어 감정인의 법정출석이 필요한 경우 법정출석비용은 그가 스스로 부담한다.

인민법원이 감정 촉탁 시 감정료에 감정인법정출석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정한 경우당사자에게 선납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재감정 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감정인이 해당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3. 감정 절차가 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경우
4. 감정의견의 근거가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
5. 감정의견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전항 제(1)호 ~ 제(3)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감정인은 이미 수취한 감정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 규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을 보정•보충하거나 증거인부(補充質證)를 보충하거나 다시 하는 등 방식으로 감정의견 하자의 해결이 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감정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재감정이 이뤄지는 경우 기존의 감정의견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1. 일방 당사자가 스스로 유관기관 또는 인원에게 외뢰하여 확보한 전문적 문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증거 또는 이유를 보유하고 있고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여야 한다.
2. 감정의견이 채택된 후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의견을 취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감정료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경위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합리적 비용을 감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감정의견을 채택한 후 감정인의 감정의견 취소를 허락하는 경우 그에게 감정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인민법원은 검증 전에 검증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불참은 검증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검증사항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해석하고 소명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검증 중의 중요사항을 유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인민법원은 물증 또는 현장 검증 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검증의 시간, 장소, 검증인, 현장출석자, 검증의 경과•결과를 기록한 후 검증인과 현장출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도한 현장도면에는 제도 시간과 위치, 제도인의 성명과 신분 등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1. 유관업체•기관이 작성한 사건 사실과 관련 된 문서•자료를 발췌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하고 작성업체•기관 또는 보관업체•기관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발췌자와 기타 조사요원이 발췌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발췌문•발췌자료는 내용에 상응하는 온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1. 당사자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증 제출 명령을 내릴 것을 인민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그가 신청하는 제출서증의 명칭 또는 내용, 해당 서증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사실의 중요성, 해당 증서가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다는 근거, 해당 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서증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규정•관습 등 요인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증거와 결부시켜 증서가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서증 제출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 쪽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변론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한 제출서증이 불명확하거나, 서증이 요증사실의 증명에 있어 불필요적이거나, 요증사실이 재판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서증이 상대방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아니하거나, 이 규정 제47조의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지 아니한다.당사자의 신청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증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증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자는 서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서증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적이 있는 서증
3.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서증
4. 법률규정에 의해 상대방 당사자가 열람•획득할 권리가 있는 서증
5. 장부, 원시 기장증빙
6. 인민법원이 응당히 서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

전항에 나열된 서증이 국가기밀, 상업비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과 연관되었거나 법률규정상 응당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출 이후에 공개적으로 증거인부(質證)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서증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서증의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서증을 통제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13조에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서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III. 거증기간 및 증거교환**1. 피고는 답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소송청구 및 사실 근거와 이유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2. 인민법원은 심리 전 준비단계에서 당사에게 거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거증통지서에는 거증책임의 분배 원칙 및 요구사항, 인민법원에 증거 조사•수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인민법원이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거증기간 및 기간 경과 후 증거 제출 시의 법적 결과 등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1. 거증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후 인민법원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이 거증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제1심 일반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의 거증기간은 최소 15일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제2심 사건의 거증기간은 최소 10일이어야 한다.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의 거증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액소송사건의 거증기간은 통상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거증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반박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된 증거의 출처•형태 등 방면의 하자를 보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참작하여 거증기간을 다시 확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전항에 규정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당사자가 거증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는데 객관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한 “당사자가 해당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전항의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거증능력, 거증기간 내에 증거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 등 요인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 또는 민사행위의 효력이 인민법원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인정한 바와 불일치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관계의 성격 또는 민사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단, 법률관계의 성격이 재판의 이유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변론이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상황하에서 당사자가 법정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소송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거증기간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1. 거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거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하여야 하며 거증기간을 적당히 연장하고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장된 거증기간은 기타 당사에게도 적용된다.신청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불허하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방식에 따라 거증기간을 확정한다.
2.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거증기간은 중지되며 관할권 이의신청 기각 재정(裁定)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기간 산정을 회복한다.
3. 당사자가 추가되거나 독립적 청구권이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거나 독립적 청구권이 없는 제3자가 인민법원의 통지에 의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 규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새로 참가하는 당사자를 위한 거증기간을 확정하여야 하며 해당 거증기간은 기타 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
4.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 제1심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파기환송 이유를 참작하여 거증기간을 확정할 수 있다.
5.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추가•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거증기간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6. 공시송달한 때에는 공시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거증기간을 기산한다.
7.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1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교환 절차를 통해 심리 전 준비를 하는 경우 증거교환일이 거증기간 만료일이다.

증거교환의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후 인민법원의 허락을 받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거증기간 연장 신청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증거교환일은 상응하게 연기한다.1. 증거교환은 심판원의 진행하에 이뤄져야 한다.

증거교환 과정에서 심판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증거를 소송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의가 있는 증거는 요증사실별로 분류하여 소송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의 제기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증거교환을 통해 양 쪽 당사자의 주요 쟁점을 확정한다.1.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를 받은 후 반박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교환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기간 경과 후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인민법원이 과태료에 처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경과 후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관상 과실의 크기, 소송 지연을 초래한 상황, 소송 목적액 등 요인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확정한다.

**IV. 증거인부(質證)** 1. 당사자가 심리 전 준비단계 또는 인민법원의 조사•신문 과정에서 증거인부(質證)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는 증거는 증거인부(質證)를 거친 증거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증거인부(質證) 의견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락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적시에 서면 증거인부(質證) 의견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에 대한 증거인부(質證) 시 당사자는 증거의 원본 또는 원물을 보여주어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원본 또는 원물을 보여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인민법원이 사본 또는 복제품을 보여주는 것을 허락한 경우
3. 원본 또는 원물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나 사본•복제품이 원본•복제품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4. 증거인부(質證)는 통상 다음 순성에 따라 진행한다.
5. 원고가 증거를 보여주고 피고•제3자가 원고와 증거인부(質證)를 한다.
6. 피고가 증거를 보여주고 원고•제3자가 피고와 증거인부(質證)를 한다.
7. 제3자가 증거를 보여주고 원고•피고가 제3자와 증거인부(質證)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사•수집한 증거는 심판원이 증거 조사•수집 상황을 설명한 후 인민법원에 증거 조사•수집을 신청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와 증거인부(質證)를 한다.인민법원이 직권에 의해 조사•수집한 증거는 심판원이 증거 조사•수집 상황을 설명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1. 당사자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성실하고 온전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진술이 종전의 진술과 불일치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이유 소명을 명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소송능력, 증거 및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심사하고 인정하여야 한다.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인민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위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한다.1.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현장에 출석해 사실관계에 관한 신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현장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 있어 신문 시간, 장소, 출석 거부의 결과 등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인민법원은 신문에 앞서 당사자에게 승낙서를 체결하고 승낙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승낙서에는 성실하게 진술하고 은폐•왜곡•첨삭하지 아니하겠다는 승낙과 거짓 진술 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승낙서에 서명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승낙서를 낭독할 수 없을 경우 서기관이 낭독하고 설명한다.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승낙서의 체결 또는 낭독을 거부하거나, 신문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상황과 결부시켜 요증사실의 진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정확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요증사실이 그의 연령, 지력 상태 또는 정신건강 상태와 어울리는 민사행위무능력자와 민사행위제한능력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1. 인민법원은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해 심판원과 당사자의 신문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증인이 심리 전 준비단계 또는 인민법원의 조사•신문 등 양 쪽 당사자가 있는 장소에서 증언을 진술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증인이 기타 방식으로 증언하는 것을 양 쪽 당사자가 동의하고 인민법원이 허락한 경우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을 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 서면 등 방식으로 한 증언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1. 증인의 법정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거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증인의 성명•직업•주소•연락방식, 증언할 주요 내용, 증언 내용과 요증사실의 연관성, 증인의 법정 출석의 필요성을 기재하여야 한다.<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96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에 의해 증인에게 법정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1. 인민법원은 증인법정출석 신청을 허가한 경우 증인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양 쪽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증언할 시간과 장소, 증언할 사항과 요구사항 및 위증의 법적 결과 등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 증언 사항이 요증사실과 무관하거나 증인에게 법정 출석을 통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인민법원은 증인에게 증언에 앞서 승낙서를 체결하고 법정에서 승낙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단, 민사행위무능력자와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증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승낙서를 낭독할 수 없을 경우 서기관이 대신 낭독하고 설명한다.증인이 승낙서의 체결 또는 낭독을 거부하는 경우 증언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증인승낙서의 내용은 당사자승낙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1. 증인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추측성•추정성•평론성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법정심리 과정을 방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증언을 함에 있어 사전에 준비한 서면자료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증언을 진술하여서는 아니된다.증인에게 언어표현 장애가 있을 경우 기타 표현 방식으로 증언할 수 있다.1. 증인은 그가 증언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또는 방청객이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제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1종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1. 심판원은 증인을 신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심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증인신문 시 기타 증인이 현장에 있어서는 아니된다.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상호 간의 대질을 요구할 수 있다.1. 증인은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한 후 인민법원에 법정출석및증언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증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정출석및증언비용을 미리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서면증언, 시청각 통신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 방식의 증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다.

민사소송법 제73조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여야 한다.1. 증인이 인민법원의 허락을 받고 서면증언 방식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 승낙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청각 통신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 방식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 승낙서를 체결하고 승낙서의 내용을 낭독하여야 한다.
2.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증인신문 내용이 요증사실과 무관하거나 증인을 협박•모욕하거나 유도신문을 하는 등 상황이 있을 경우 심판원은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증인이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송참가인 또는 타인이 폭력•협박•매수 등 방식으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증인이 증언을 한 후 모욕•비방•모함•공갈•구타 등 방식으로 증인을 보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위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행한 자에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1. 감정인이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심리일 3일 전에 출석 시간, 장소와 요구사항을 감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 업무 수행자가 감정기관을 대표하여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1. 감정인은 감정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이의 및 심판원의 신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의 허락을 받고 법정심리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적시에 서면답변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거인부(質證)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1. 감정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감정의견을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유관 주관부서 또는 조직에게 법정 출석을 거부한 감정인에 대한 처벌을 건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일 내에 재정(裁定)을 내리고 감정인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한다.감정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당사자가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여야 한다.1. 법정의 허락을 받은 후 당사자는 감정인•검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감정인•검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협박•모욕 등 부적절한 언어와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9조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의 법정 출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의 기본상황과 신청 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허가하는 때에는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심판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법정의 허락을 받은 후 당사자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신청한 전문지식을 가춘 사람 사이에 사건의 관련 문제에 관한 대질을 할 수도 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은 감정의견에 대한 증거인부(質證) 또는 전문적 문제에 대한 의견 발표를 제외한 기타 법정심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V. 증거의 심사인정**1. 인민법원은 증거에 의해 증명된 사실을 근거로 법에 의거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법정(法定) 절차에 따라 전면적•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야 하며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법관(法官)으로서의 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논리적 추론 및 일상생활 경험을 활용하여 증거의 증명능력 유무와 증명능력의 크기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의 이유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사기•협박•악의결탁 사실에 대한 증명, 구두유언 또는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인민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해당 요증사실의 존재 가능성을 확신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소송보전, 제척•기피 등 절차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소명과 관련 증거를 결부시켜 관련 사실의 존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1. 심판원은 단일 증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면에서 심사인정한다.
2. 증거가 원본•원물인지 여부, 사본•복제품이 원본•원물과 틀림이 없는지 여부
3. 증거가 본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4. 증거의 형태•출처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5. 증거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
6. 증인 또는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7. 심판원은 사건의 전부 증거에 대하여 각 증거와 사실의 관련도, 각 증거 사이의 연계 등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8.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인정한 증거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인정하여야 한다. 단, 법률•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가 증거에 대한 인정을 번복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229조에 따라 처리한다.1. 다음 각 호의 증거는 사실인정의 단독적 증거가 될 수 없다.
2. 당사자의 진술
3.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진술한 그의 연령, 지력상태 또는 정신건강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증언
4. 일방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이 진술한 증언
5. 의문점이 있는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6. 원본•원물과 대조확인이 불가능한 사본•복제품
7. 공문서증의 작성자가 문서의 원본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담긴 부본은 정본과 동일한 증명력을 갖는다.

국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부본•발췌록에 대하여 당안(档案)부서 또는 원본 작성기관이 그 내용이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본•부본•발췌록은 원본과 동일한 증명력을 갖는다. 1. 사문서증의 진정 여부에 대한 거증책임은 사문서로 사실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였거나 지문을 찍은 사문서증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사문서증에 삭제•수정•추가 흔적이 있거나 기타 형태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1. 인민법원은 전자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인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전자 데이터를 생성•저장•전송함에 있어 의존한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환경이 온전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3. 전자 데이터를 생성•저장•전송함에 있어 의존한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환경이 정상적인 운영상태에 있는지 여부 또는 비정상 운영상태에 있을 때 전자 데이터의 생성•저장•전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전자 데이터를 생성•저장•전송함에 있어 의존한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환경이 오류 발생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감시•검증 수단을 갖추었는지 여부
5. 전자 데이터가 온전하게 보관•전송•추출되었는지 여부, 보관•전송•추출 방법이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6. 전자 데이터가 정상적인 왕래 활동 중에 형성되고 보관되어 왔는지 여부
7. 전자 데이터를 보관•전송•추출한 주체가 적절한지 여부
8. 전자 데이터의 온전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 또는 검증 등 방법으로 전자 데이터의 진실성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1. 전자 데이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단, 충분히 반박 가능한 반대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보관하고 있는 자신에게 불리한 전자 데이터
3. 전자 데이터를 보관 및 기록한 중립의 제3자 플랫폼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경우
4. 정상적인 업무 활동 중에 형성된 경우
5. 당안(档案)관리의 방식으로 보관된 경우
6.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방식으로 보관•전송•추출된 경우

전자 데이터의 내용이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단, 충분히 번복 가능한 반대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통제하에 있는 증거의 제출을 거부하고 요증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당 증거의 내용이 통제인에게 불리한 내용임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주장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인민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인정함에 있어 증인의 지력 상태, 품성, 지식, 경험, 법의식과 전문기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인민법원은 재판문서에 증거 채택 여부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증거의 경우 재판문서에 채택 여부의 이유를 서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VI. 기타**1. 증인•감정인•검증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참가인이 증거를 위조•인멸하거나,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타인을 사주•매수•협박하거나, 증인•감정인•검증인을 보복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1. 이 규정에서 증거보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법률•사법해석의 재산보전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 대한 신문은 이 규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서증에 관한 규정은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에도 적용된다. 컴퓨터 등 전자장치에 저장된 시청각 자료는 전자 데이터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1.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공포•시행한 후 최고인민법원이 그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불일치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  告《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的决定》已于2019年10月1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7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5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9年12月25日**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法释〔2019〕19号（2001年12月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01次会议通过  根据2019年10月1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77次会议《关于修改〈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的决定》修正）为保证人民法院正确认定案件事实，公正、及时审理民事案件，保障和便利当事人依法行使诉讼权利，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以下简称民事诉讼法）等有关法律的规定，结合民事审判经验和实际情况，制定本规定。**一、当事人举证**　　**第一条** 原告向人民法院起诉或者被告提出反诉，应当提供符合起诉条件的相应的证据。　　**第二条** 人民法院应当向当事人说明举证的要求及法律后果，促使当事人在合理期限内积极、全面、正确、诚实地完成举证。当事人因客观原因不能自行收集的证据，可申请人民法院调查收集。　　**第三条** 在诉讼过程中，一方当事人陈述的于己不利的事实，或者对于己不利的事实明确表示承认的，另一方当事人无需举证证明。在证据交换、询问、调查过程中，或者在起诉状、答辩状、代理词等书面材料中，当事人明确承认于己不利的事实的，适用前款规定。**第四条** 一方当事人对于另一方当事人主张的于己不利的事实既不承认也不否认，经审判人员说明并询问后，其仍然不明确表示肯定或者否定的，视为对该事实的承认。　　**第五条** 当事人委托诉讼代理人参加诉讼的，除授权委托书明确排除的事项外，诉讼代理人的自认视为当事人的自认。当事人在场对诉讼代理人的自认明确否认的，不视为自认。　　**第六条** 普通共同诉讼中，共同诉讼人中一人或者数人作出的自认，对作出自认的当事人发生效力。必要共同诉讼中，共同诉讼人中一人或者数人作出自认而其他共同诉讼人予以否认的，不发生自认的效力。其他共同诉讼人既不承认也不否认，经审判人员说明并询问后仍然不明确表示意见的，视为全体共同诉讼人的自认。**第七条** 一方当事人对于另一方当事人主张的于己不利的事实有所限制或者附加条件予以承认的，由人民法院综合案件情况决定是否构成自认。　　**第八条**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九十六条第一款规定的事实，不适用有关自认的规定。自认的事实与已经查明的事实不符的，人民法院不予确认。　　**第九条** 有下列情形之一，当事人在法庭辩论终结前撤销自认的，人民法院应当准许：　　（一）经对方当事人同意的；（二）自认是在受胁迫或者重大误解情况下作出的。人民法院准许当事人撤销自认的，应当作出口头或者书面裁定。　　**第十条** 下列事实，当事人无须举证证明：　　（一）自然规律以及定理、定律；　　（二）众所周知的事实；　　（三）根据法律规定推定的事实；　　（四）根据已知的事实和日常生活经验法则推定出的另一事实；　　（五）已为仲裁机构的生效裁决所确认的事实；　　（六）已为人民法院发生法律效力的裁判所确认的基本事实；　　（七）已为有效公证文书所证明的事实。前款第二项至第五项事实，当事人有相反证据足以反驳的除外；第六项、第七项事实，当事人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第十一条** 当事人向人民法院提供证据，应当提供原件或者原物。如需自己保存证据原件、原物或者提供原件、原物确有困难的，可以提供经人民法院核对无异的复制件或者复制品。　　**第十二条** 以动产作为证据的，应当将原物提交人民法院。原物不宜搬移或者不宜保存的，当事人可以提供复制品、影像资料或者其他替代品。人民法院在收到当事人提交的动产或者替代品后，应当及时通知双方当事人到人民法院或者保存现场查验。　　**第十三条** 当事人以不动产作为证据的，应当向人民法院提供该不动产的影像资料。人民法院认为有必要的，应当通知双方当事人到场进行查验。　**第十四条** 电子数据包括下列信息、电子文件：　　（一）网页、博客、微博客等网络平台发布的信息；　　（二）手机短信、电子邮件、即时通信、通讯群组等网络应用服务的通信信息；　　（三）用户注册信息、身份认证信息、电子交易记录、通信记录、登录日志等信息；　　（四）文档、图片、音频、视频、数字证书、计算机程序等电子文件；（五）其他以数字化形式存储、处理、传输的能够证明案件事实的信息。　　**第十五条** 当事人以视听资料作为证据的，应当提供存储该视听资料的原始载体。当事人以电子数据作为证据的，应当提供原件。电子数据的制作者制作的与原件一致的副本，或者直接来源于电子数据的打印件或其他可以显示、识别的输出介质，视为电子数据的原件。　　**第十六条** 当事人提供的公文书证系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形成的，该证据应当经所在国公证机关证明，或者履行中华人民共和国与该所在国订立的有关条约中规定的证明手续。　　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形成的涉及身份关系的证据，应当经所在国公证机关证明并经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认证，或者履行中华人民共和国与该所在国订立的有关条约中规定的证明手续。当事人向人民法院提供的证据是在香港、澳门、台湾地区形成的，应当履行相关的证明手续。**第十七条** 当事人向人民法院提供外文书证或者外文说明资料，应当附有中文译本。**第十八条** 双方当事人无争议的事实符合《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九十六条第一款规定情形的，人民法院可以责令当事人提供有关证据。　　**第十九条** 当事人应当对其提交的证据材料逐一分类编号，对证据材料的来源、证明对象和内容作简要说明，签名盖章，注明提交日期，并依照对方当事人人数提出副本。人民法院收到当事人提交的证据材料，应当出具收据，注明证据的名称、份数和页数以及收到的时间，由经办人员签名或者盖章。**二、证据的调查收集和保全**　　**第二十条** 当事人及其诉讼代理人申请人民法院调查收集证据，应当在举证期限届满前提交书面申请。申请书应当载明被调查人的姓名或者单位名称、住所地等基本情况、所要调查收集的证据名称或者内容、需要由人民法院调查收集证据的原因及其要证明的事实以及明确的线索。**第二十一条** 人民法院调查收集的书证，可以是原件，也可以是经核对无误的副本或者复制件。是副本或者复制件的，应当在调查笔录中说明来源和取证情况。**第二十二条** 人民法院调查收集的物证应当是原物。被调查人提供原物确有困难的，可以提供复制品或者影像资料。提供复制品或者影像资料的，应当在调查笔录中说明取证情况。　　**第二十三条** 人民法院调查收集视听资料、电子数据，应当要求被调查人提供原始载体。　　提供原始载体确有困难的，可以提供复制件。提供复制件的，人民法院应当在调查笔录中说明其来源和制作经过。人民法院对视听资料、电子数据采取证据保全措施的，适用前款规定。**第二十四条** 人民法院调查收集可能需要鉴定的证据，应当遵守相关技术规范，确保证据不被污染。　　**第二十五条** 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根据民事诉讼法第八十一条的规定申请证据保全的，申请书应当载明需要保全的证据的基本情况、申请保全的理由以及采取何种保全措施等内容。　　当事人根据民事诉讼法第八十一条第一款的规定申请证据保全的，应当在举证期限届满前向人民法院提出。法律、司法解释对诉前证据保全有规定的，依照其规定办理。　　**第二十六条** 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申请采取查封、扣押等限制保全标的物使用、流通等保全措施，或者保全可能对证据持有人造成损失的，人民法院应当责令申请人提供相应的担保。担保方式或者数额由人民法院根据保全措施对证据持有人的影响、保全标的物的价值、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争议的诉讼标的金额等因素综合确定。　　**第二十七条** 人民法院进行证据保全，可以要求当事人或者诉讼代理人到场。　　根据当事人的申请和具体情况，人民法院可以采取查封、扣押、录音、录像、复制、鉴定、勘验等方法进行证据保全，并制作笔录。在符合证据保全目的的情况下，人民法院应当选择对证据持有人利益影响最小的保全措施。**第二十八条** 申请证据保全错误造成财产损失，当事人请求申请人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二十九条** 人民法院采取诉前证据保全措施后，当事人向其他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起诉讼的，采取保全措施的人民法院应当根据当事人的申请，将保全的证据及时移交受理案件的人民法院。　　**第三十条** 人民法院在审理案件过程中认为待证事实需要通过鉴定意见证明的，应当向当事人释明，并指定提出鉴定申请的期间。符合《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九十六条第一款规定情形的，人民法院应当依职权委托鉴定。　　**第三十一条** 当事人申请鉴定，应当在人民法院指定期间内提出，并预交鉴定费用。逾期不提出申请或者不预交鉴定费用的，视为放弃申请。对需要鉴定的待证事实负有举证责任的当事人，在人民法院指定期间内无正当理由不提出鉴定申请或者不预交鉴定费用，或者拒不提供相关材料，致使待证事实无法查明的，应当承担举证不能的法律后果。　　**第三十二条** 人民法院准许鉴定申请的，应当组织双方当事人协商确定具备相应资格的鉴定人。当事人协商不成的，由人民法院指定。　　人民法院依职权委托鉴定的，可以在询问当事人的意见后，指定具备相应资格的鉴定人。人民法院在确定鉴定人后应当出具委托书，委托书中应当载明鉴定事项、鉴定范围、鉴定目的和鉴定期限。　　**第三十三条** 鉴定开始之前，人民法院应当要求鉴定人签署承诺书。承诺书中应当载明鉴定人保证客观、公正、诚实地进行鉴定，保证出庭作证，如作虚假鉴定应当承担法律责任等内容。鉴定人故意作虚假鉴定的，人民法院应当责令其退还鉴定费用，并根据情节，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的规定进行处罚。　　**第三十四条** 人民法院应当组织当事人对鉴定材料进行质证。未经质证的材料，不得作为鉴定的根据。　　经人民法院准许，鉴定人可以调取证据、勘验物证和现场、询问当事人或者证人。　　**第三十五条** 鉴定人应当在人民法院确定的期限内完成鉴定，并提交鉴定书。鉴定人无正当理由未按期提交鉴定书的，当事人可以申请人民法院另行委托鉴定人进行鉴定。人民法院准许的，原鉴定人已经收取的鉴定费用应当退还；拒不退还的，依照本规定第八十一条第二款的规定处理。　　**第三十六条** 人民法院对鉴定人出具的鉴定书，应当审查是否具有下列内容：　　（一）委托法院的名称；　　（二）委托鉴定的内容、要求；　　（三）鉴定材料；　　（四）鉴定所依据的原理、方法；　　（五）对鉴定过程的说明；　　（六）鉴定意见；　　（七）承诺书。鉴定书应当由鉴定人签名或者盖章，并附鉴定人的相应资格证明。委托机构鉴定的，鉴定书应当由鉴定机构盖章，并由从事鉴定的人员签名。　　**第三十七条** 人民法院收到鉴定书后，应当及时将副本送交当事人。　　当事人对鉴定书的内容有异议的，应当在人民法院指定期间内以书面方式提出。对于当事人的异议，人民法院应当要求鉴定人作出解释、说明或者补充。人民法院认为有必要的，可以要求鉴定人对当事人未提出异议的内容进行解释、说明或者补充。　　**第三十八条** 当事人在收到鉴定人的书面答复后仍有异议的，人民法院应当根据《诉讼费用交纳办法》第十一条的规定，通知有异议的当事人预交鉴定人出庭费用，并通知鉴定人出庭。有异议的当事人不预交鉴定人出庭费用的，视为放弃异议。双方当事人对鉴定意见均有异议的，分摊预交鉴定人出庭费用。　　**第三十九条** 鉴定人出庭费用按照证人出庭作证费用的标准计算，由败诉的当事人负担。因鉴定意见不明确或者有瑕疵需要鉴定人出庭的，出庭费用由其自行负担。人民法院委托鉴定时已经确定鉴定人出庭费用包含在鉴定费用中的，不再通知当事人预交。　　**第四十条** 当事人申请重新鉴定，存在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准许:　　（一）鉴定人不具备相应资格的；　　（二）鉴定程序严重违法的；　　（三）鉴定意见明显依据不足的；　　（四）鉴定意见不能作为证据使用的其他情形。　　存在前款第一项至第三项情形的，鉴定人已经收取的鉴定费用应当退还。拒不退还的，依照本规定第八十一条第二款的规定处理。　　对鉴定意见的瑕疵，可以通过补正、补充鉴定或者补充质证、重新质证等方法解决的，人民法院不予准许重新鉴定的申请。重新鉴定的，原鉴定意见不得作为认定案件事实的根据。**第四十一条** 对于一方当事人就专门性问题自行委托有关机构或者人员出具的意见，另一方当事人有证据或者理由足以反驳并申请鉴定的，人民法院应予准许。　　**第四十二条** 鉴定意见被采信后，鉴定人无正当理由撤销鉴定意见的，人民法院应当责令其退还鉴定费用，并可以根据情节，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的规定对鉴定人进行处罚。当事人主张鉴定人负担由此增加的合理费用的，人民法院应予支持。人民法院采信鉴定意见后准许鉴定人撤销的，应当责令其退还鉴定费用。　**第四十三条** 人民法院应当在勘验前将勘验的时间和地点通知当事人。当事人不参加的，不影响勘验进行。　　当事人可以就勘验事项向人民法院进行解释和说明，可以请求人民法院注意勘验中的重要事项。人民法院勘验物证或者现场，应当制作笔录，记录勘验的时间、地点、勘验人、在场人、勘验的经过、结果，由勘验人、在场人签名或者盖章。对于绘制的现场图应当注明绘制的时间、方位、测绘人姓名、身份等内容。　　**第四十四条** 摘录有关单位制作的与案件事实相关的文件、材料，应当注明出处，并加盖制作单位或者保管单位的印章，摘录人和其他调查人员应当在摘录件上签名或者盖章。摘录文件、材料应当保持内容相应的完整性。　　**第四十五条** 当事人根据《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一百一十二条的规定申请人民法院责令对方当事人提交书证的，申请书应当载明所申请提交的书证名称或者内容、需要以该书证证明的事实及事实的重要性、对方当事人控制该书证的根据以及应当提交该书证的理由。对方当事人否认控制书证的，人民法院应当根据法律规定、习惯等因素，结合案件的事实、证据，对于书证是否在对方当事人控制之下的事实作出综合判断。**第四十六条** 人民法院对当事人提交书证的申请进行审查时，应当听取对方当事人的意见，必要时可以要求双方当事人提供证据、进行辩论。　　当事人申请提交的书证不明确、书证对于待证事实的证明无必要、待证事实对于裁判结果无实质性影响、书证未在对方当事人控制之下或者不符合本规定第四十七条情形的，人民法院不予准许。当事人申请理由成立的，人民法院应当作出裁定，责令对方当事人提交书证；理由不成立的，通知申请人。　　**第四十七条** 下列情形，控制书证的当事人应当提交书证：　　（一）控制书证的当事人在诉讼中曾经引用过的书证；　　（二）为对方当事人的利益制作的书证；　　（三）对方当事人依照法律规定有权查阅、获取的书证；　　（四）账簿、记账原始凭证；　　（五）人民法院认为应当提交书证的其他情形。前款所列书证，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当事人或第三人的隐私，或者存在法律规定应当保密的情形的，提交后不得公开质证。　　**第四十八条** 控制书证的当事人无正当理由拒不提交书证的，人民法院可以认定对方当事人所主张的书证内容为真实。控制书证的当事人存在《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一百一十三条规定情形的，人民法院可以认定对方当事人主张以该书证证明的事实为真实。**三、举证时限与证据交换****第四十九条** 被告应当在答辩期届满前提出书面答辩，阐明其对原告诉讼请求及所依据的事实和理由的意见。　**第五十条** 人民法院应当在审理前的准备阶段向当事人送达举证通知书。举证通知书应当载明举证责任的分配原则和要求、可以向人民法院申请调查收集证据的情形、人民法院根据案件情况指定的举证期限以及逾期提供证据的法律后果等内容。　　**第五十一条** 举证期限可以由当事人协商，并经人民法院准许。　　人民法院指定举证期限的，适用第一审普通程序审理的案件不得少于十五日，当事人提供新的证据的第二审案件不得少于十日。适用简易程序审理的案件不得超过十五日，小额诉讼案件的举证期限一般不得超过七日。举证期限届满后，当事人提供反驳证据或者对已经提供的证据的来源、形式等方面的瑕疵进行补正的，人民法院可以酌情再次确定举证期限，该期限不受前款规定的期间限制。　　**第五十二条** 当事人在举证期限内提供证据存在客观障碍，属于民事诉讼法第六十五条第二款规定的“当事人在该期限内提供证据确有困难”的情形。前款情形，人民法院应当根据当事人的举证能力、不能在举证期限内提供证据的原因等因素综合判断。必要时，可以听取对方当事人的意见。　**第五十三条** 诉讼过程中，当事人主张的法律关系性质或者民事行为效力与人民法院根据案件事实作出的认定不一致的，人民法院应当将法律关系性质或者民事行为效力作为焦点问题进行审理。但法律关系性质对裁判理由及结果没有影响，或者有关问题已经当事人充分辩论的除外。存在前款情形，当事人根据法庭审理情况变更诉讼请求的，人民法院应当准许并可以根据案件的具体情况重新指定举证期限。　**第五十四条** 当事人申请延长举证期限的，应当在举证期限届满前向人民法院提出书面申请。　　申请理由成立的，人民法院应当准许，适当延长举证期限，并通知其他当事人。延长的举证期限适用于其他当事人。申请理由不成立的，人民法院不予准许，并通知申请人。　　**第五十五条** 存在下列情形的，举证期限按照如下方式确定：　　（一）当事人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二十七条规定提出管辖权异议的，举证期限中止，自驳回管辖权异议的裁定生效之日起恢复计算；　　（二）追加当事人、有独立请求权的第三人参加诉讼或者无独立请求权的第三人经人民法院通知参加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照本规定第五十一条的规定为新参加诉讼的当事人确定举证期限，该举证期限适用于其他当事人；　　（三）发回重审的案件，第一审人民法院可以结合案件具体情况和发回重审的原因，酌情确定举证期限；　　（四）当事人增加、变更诉讼请求或者提出反诉的，人民法院应当根据案件具体情况重新确定举证期限；（五）公告送达的，举证期限自公告期届满之次日起计算。　　**第五十六条** 人民法院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三十三条第四项的规定，通过组织证据交换进行审理前准备的，证据交换之日举证期限届满。证据交换的时间可以由当事人协商一致并经人民法院认可，也可以由人民法院指定。当事人申请延期举证经人民法院准许的，证据交换日相应顺延。　　**第五十七条** 证据交换应当在审判人员的主持下进行。在证据交换的过程中，审判人员对当事人无异议的事实、证据应当记录在卷；对有异议的证据，按照需要证明的事实分类记录在卷，并记载异议的理由。通过证据交换，确定双方当事人争议的主要问题。**第五十八条** 当事人收到对方的证据后有反驳证据需要提交的，人民法院应当再次组织证据交换。**第五十九条** 人民法院对逾期提供证据的当事人处以罚款的，可以结合当事人逾期提供证据的主观过错程度、导致诉讼迟延的情况、诉讼标的金额等因素，确定罚款数额。**四、质证**　**第六十条** 当事人在审理前的准备阶段或者人民法院调查、询问过程中发表过质证意见的证据，视为质证过的证据。当事人要求以书面方式发表质证意见，人民法院在听取对方当事人意见后认为有必要的，可以准许。人民法院应当及时将书面质证意见送交对方当事人。　**第六十一条** 对书证、物证、视听资料进行质证时，当事人应当出示证据的原件或者原物。但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一）出示原件或者原物确有困难并经人民法院准许出示复制件或者复制品的；（二）原件或者原物已不存在，但有证据证明复制件、复制品与原件或者原物一致的。**第六十二条** 质证一般按下列顺序进行：　　（一）原告出示证据，被告、第三人与原告进行质证；　　（二）被告出示证据，原告、第三人与被告进行质证；　　（三）第三人出示证据，原告、被告与第三人进行质证。　　人民法院根据当事人申请调查收集的证据，审判人员对调查收集证据的情况进行说明后，由提出申请的当事人与对方当事人、第三人进行质证。人民法院依职权调查收集的证据，由审判人员对调查收集证据的情况进行说明后，听取当事人的意见。　**第六十三条** 当事人应当就案件事实作真实、完整的陈述。　　当事人的陈述与此前陈述不一致的，人民法院应当责令其说明理由，并结合当事人的诉讼能力、证据和案件具体情况进行审查认定。当事人故意作虚假陈述妨碍人民法院审理的，人民法院应当根据情节，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的规定进行处罚。　　**第六十四条** 人民法院认为有必要的，可以要求当事人本人到场，就案件的有关事实接受询问。人民法院要求当事人到场接受询问的，应当通知当事人询问的时间、地点、拒不到场的后果等内容。　　**第六十五条** 人民法院应当在询问前责令当事人签署保证书并宣读保证书的内容。　　保证书应当载明保证据实陈述，绝无隐瞒、歪曲、增减，如有虚假陈述应当接受处罚等内容。当事人应当在保证书上签名、捺印。当事人有正当理由不能宣读保证书的，由书记员宣读并进行说明。**第六十六条** 当事人无正当理由拒不到场、拒不签署或宣读保证书或者拒不接受询问的，人民法院应当综合案件情况，判断待证事实的真伪。待证事实无其他证据证明的，人民法院应当作出不利于该当事人的认定。　**第六十七条** 不能正确表达意思的人，不能作为证人。待证事实与其年龄、智力状况或者精神健康状况相适应的无民事行为能力人和限制民事行为能力人，可以作为证人。　　**第六十八条** 人民法院应当要求证人出庭作证，接受审判人员和当事人的询问。证人在审理前的准备阶段或者人民法院调查、询问等双方当事人在场时陈述证言的，视为出庭作证。　　双方当事人同意证人以其他方式作证并经人民法院准许的，证人可以不出庭作证。无正当理由未出庭的证人以书面等方式提供的证言，不得作为认定案件事实的根据。　　**第六十九条** 当事人申请证人出庭作证的，应当在举证期限届满前向人民法院提交申请书。　　申请书应当载明证人的姓名、职业、住所、联系方式，作证的主要内容，作证内容与待证事实的关联性，以及证人出庭作证的必要性。符合《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九十六条第一款规定情形的，人民法院应当依职权通知证人出庭作证。　　**第七十条** 人民法院准许证人出庭作证申请的，应当向证人送达通知书并告知双方当事人。通知书中应当载明证人作证的时间、地点，作证的事项、要求以及作伪证的法律后果等内容。当事人申请证人出庭作证的事项与待证事实无关，或者没有通知证人出庭作证必要的，人民法院不予准许当事人的申请。　　**第七十一条** 人民法院应当要求证人在作证之前签署保证书，并在法庭上宣读保证书的内容。但无民事行为能力人和限制民事行为能力人作为证人的除外。　　证人确有正当理由不能宣读保证书的，由书记员代为宣读并进行说明。　　证人拒绝签署或者宣读保证书的，不得作证，并自行承担相关费用。证人保证书的内容适用当事人保证书的规定。　　**第七十二条** 证人应当客观陈述其亲身感知的事实，作证时不得使用猜测、推断或者评论性语言。　　证人作证前不得旁听法庭审理，作证时不得以宣读事先准备的书面材料的方式陈述证言。证人言辞表达有障碍的，可以通过其他表达方式作证。　　**第七十三条** 证人应当就其作证的事项进行连续陈述。当事人及其法定代理人、诉讼代理人或者旁听人员干扰证人陈述的，人民法院应当及时制止，必要时可以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条的规定进行处罚。　　**第七十四条** 审判人员可以对证人进行询问。当事人及其诉讼代理人经审判人员许可后可以询问证人。　　询问证人时其他证人不得在场。人民法院认为有必要的，可以要求证人之间进行对质。**第七十五条** 证人出庭作证后，可以向人民法院申请支付证人出庭作证费用。证人有困难需要预先支取出庭作证费用的，人民法院可以根据证人的申请在出庭作证前支付。　　**第七十六条** 证人确有困难不能出庭作证，申请以书面证言、视听传输技术或者视听资料等方式作证的，应当向人民法院提交申请书。申请书中应当载明不能出庭的具体原因。符合民事诉讼法第七十三条规定情形的，人民法院应当准许。**第七十七条** 证人经人民法院准许，以书面证言方式作证的，应当签署保证书；以视听传输技术或者视听资料方式作证的，应当签署保证书并宣读保证书的内容。　　**第七十八条** 当事人及其诉讼代理人对证人的询问与待证事实无关，或者存在威胁、侮辱证人或不适当引导等情形的，审判人员应当及时制止。必要时可以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条、第一百一十一条的规定进行处罚。证人故意作虚假陈述，诉讼参与人或者其他人以暴力、威胁、贿买等方法妨碍证人作证，或者在证人作证后以侮辱、诽谤、诬陷、恐吓、殴打等方式对证人打击报复的，人民法院应当根据情节，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的规定，对行为人进行处罚。　　**第七十九条** 鉴定人依照民事诉讼法第七十八条的规定出庭作证的，人民法院应当在开庭审理三日前将出庭的时间、地点及要求通知鉴定人。委托机构鉴定的，应当由从事鉴定的人员代表机构出庭。　**第八十条** 鉴定人应当就鉴定事项如实答复当事人的异议和审判人员的询问。当庭答复确有困难的，经人民法院准许，可以在庭审结束后书面答复。人民法院应当及时将书面答复送交当事人，并听取当事人的意见。必要时，可以再次组织质证。　　**第八十一条** 鉴定人拒不出庭作证的，鉴定意见不得作为认定案件事实的根据。人民法院应当建议有关主管部门或者组织对拒不出庭作证的鉴定人予以处罚。　　当事人要求退还鉴定费用的，人民法院应当在三日内作出裁定，责令鉴定人退还；拒不退还的，由人民法院依法执行。当事人因鉴定人拒不出庭作证申请重新鉴定的，人民法院应当准许。　　**第八十二条** 经法庭许可，当事人可以询问鉴定人、勘验人。询问鉴定人、勘验人不得使用威胁、侮辱等不适当的言语和方式。　　**第八十三条** 当事人依照民事诉讼法第七十九条和《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一百二十二条的规定，申请有专门知识的人出庭的，申请书中应当载明有专门知识的人的基本情况和申请的目的。人民法院准许当事人申请的，应当通知双方当事人。　　**第八十四条** 审判人员可以对有专门知识的人进行询问。经法庭准许，当事人可以对有专门知识的人进行询问，当事人各自申请的有专门知识的人可以就案件中的有关问题进行对质。有专门知识的人不得参与对鉴定意见质证或者就专业问题发表意见之外的法庭审理活动。**五、证据的审核认定**　　**第八十五条** 人民法院应当以证据能够证明的案件事实为根据依法作出裁判。审判人员应当依照法定程序，全面、客观地审核证据，依据法律的规定，遵循法官职业道德，运用逻辑推理和日常生活经验，对证据有无证明力和证明力大小独立进行判断，并公开判断的理由和结果。　　**第八十六条** 当事人对于欺诈、胁迫、恶意串通事实的证明，以及对于口头遗嘱或赠与事实的证明，人民法院确信该待证事实存在的可能性能够排除合理怀疑的，应当认定该事实存在。与诉讼保全、回避等程序事项有关的事实，人民法院结合当事人的说明及相关证据，认为有关事实存在的可能性较大的，可以认定该事实存在。　　**第八十七条** 审判人员对单一证据可以从下列方面进行审核认定：　　（一）证据是否为原件、原物，复制件、复制品与原件、原物是否相符；　　（二）证据与本案事实是否相关；　　（三）证据的形式、来源是否符合法律规定；　　（四）证据的内容是否真实；（五）证人或者提供证据的人与当事人有无利害关系。**第八十八条** 审判人员对案件的全部证据，应当从各证据与案件事实的关联程度、各证据之间的联系等方面进行综合审查判断。　　**第八十九条** 当事人在诉讼过程中认可的证据，人民法院应当予以确认。但法律、司法解释另有规定的除外。当事人对认可的证据反悔的，参照《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二百二十九条的规定处理。　　**第九十条** 下列证据不能单独作为认定案件事实的根据：　　（一）当事人的陈述；　　（二）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所作的与其年龄、智力状况或者精神健康状况不相当的证言；　　（三）与一方当事人或者其代理人有利害关系的证人陈述的证言；　　（四）存有疑点的视听资料、电子数据；（五）无法与原件、原物核对的复制件、复制品。　　**第九十一条** 公文书证的制作者根据文书原件制作的载有部分或者全部内容的副本，与正本具有相同的证明力。在国家机关存档的文件，其复制件、副本、节录本经档案部门或者制作原本的机关证明其内容与原本一致的，该复制件、副本、节录本具有与原本相同的证明力。　　**第九十二条** 私文书证的真实性，由主张以私文书证证明案件事实的当事人承担举证责任。　　私文书证由制作者或者其代理人签名、盖章或捺印的，推定为真实。私文书证上有删除、涂改、增添或者其他形式瑕疵的，人民法院应当综合案件的具体情况判断其证明力。　　**第九十三条** 人民法院对于电子数据的真实性，应当结合下列因素综合判断：　　（一）电子数据的生成、存储、传输所依赖的计算机系统的硬件、软件环境是否完整、可靠；　　（二）电子数据的生成、存储、传输所依赖的计算机系统的硬件、软件环境是否处于正常运行状态，或者不处于正常运行状态时对电子数据的生成、存储、传输是否有影响；　　（三）电子数据的生成、存储、传输所依赖的计算机系统的硬件、软件环境是否具备有效的防止出错的监测、核查手段；　　（四）电子数据是否被完整地保存、传输、提取，保存、传输、提取的方法是否可靠；　　（五）电子数据是否在正常的往来活动中形成和存储；　　（六）保存、传输、提取电子数据的主体是否适当；　　（七）影响电子数据完整性和可靠性的其他因素。人民法院认为有必要的，可以通过鉴定或者勘验等方法，审查判断电子数据的真实性。　　**第九十四条** 电子数据存在下列情形的，人民法院可以确认其真实性，但有足以反驳的相反证据的除外：　　（一）由当事人提交或者保管的于己不利的电子数据；　　（二）由记录和保存电子数据的中立第三方平台提供或者确认的；　　（三）在正常业务活动中形成的；　　（四）以档案管理方式保管的；　　（五）以当事人约定的方式保存、传输、提取的。电子数据的内容经公证机关公证的，人民法院应当确认其真实性，但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第九十五条** 一方当事人控制证据无正当理由拒不提交，对待证事实负有举证责任的当事人主张该证据的内容不利于控制人的，人民法院可以认定该主张成立。**第九十六条** 人民法院认定证人证言，可以通过对证人的智力状况、品德、知识、经验、法律意识和专业技能等的综合分析作出判断。　　**第九十七条** 人民法院应当在裁判文书中阐明证据是否采纳的理由。对当事人无争议的证据，是否采纳的理由可以不在裁判文书中表述。**六、其他**　　**第九十八条** 对证人、鉴定人、勘验人的合法权益依法予以保护。当事人或者其他诉讼参与人伪造、毁灭证据，提供虚假证据，阻止证人作证，指使、贿买、胁迫他人作伪证，或者对证人、鉴定人、勘验人打击报复的，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条、第一百一十一条的规定进行处罚。　　**第九十九条** 本规定对证据保全没有规定的，参照适用法律、司法解释关于财产保全的规定。除法律、司法解释另有规定外，对当事人、鉴定人、有专门知识的人的询问参照适用本规定中关于询问证人的规定；关于书证的规定适用于视听资料、电子数据；存储在电子计算机等电子介质中的视听资料，适用电子数据的规定。　　**第一百条** 本规定自2020年5月1日起施行。　　本规定公布施行后，最高人民法院以前发布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不再适用。 |